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 5. 19 선고 2021가합100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탁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변론 종결2022. 4. 14.

판결 선고2022. 5. 1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404,7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4,7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D과 사이에 대여금 600,000,000원, 변제기 2013. 10. 30., 이자 월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C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 D의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으로 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C은 2018. 4. 25.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같은 일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 표 '근저당권 내역'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일부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거나 일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증가하였다.

별지 목록 1, 3, 5 내지 12 부동산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56,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20. 2. 17. 해지, 말소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2020. 2. 17. 해지, 말소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2020. 2. 17. 해지, 말소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2020. 2. 17. 채권최고액 456,000,000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 목록 2 부동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 사건 제4 근저당권	2020. 2. 17. 해지, 말소2020. 2. 17. 채권최고액 456,000,000원으로 변경
별지 목록 4 부동산	이 사건 제4 근저당권	2020. 2. 17. 이 사건 제4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6,000,000원)의 공동담보로 추가됨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450,000,000원의 연대보증금 채무와 E조합에 대한 23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 적극재산으로 634,721,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채무자인 D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채무초과상태인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의 이자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내지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이 사건 제1, 2,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 2. 17.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고가 그동안 변제한 원리금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의 원리금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한도인 404,721,000원을 초과하여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8.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634,72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가액에 변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무가 23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04,721,000원(= 634,721,000원 - 230,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위 404,721,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404,721,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4,7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20. 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38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채무 230,567,885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중 148,8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148,800,000원 상당은 피고가 수익한 이익이 아니어서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으로 변경하고 E조합에서 38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30,567,885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148,8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148,800,000원을 전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채무자 C의 재산을 취득한 이후 이루어진 별도의 처분행위에 불과하고, 위 148,000,000원 부분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던 것이므로, 이를 공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종환

판사정지원

판사강영선

별지